

의안 번호	제3579호
----------	--------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02월 28일 김계순, 김기남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03월 11일
- 다. 상정일자 : 2025년 03월 18일
- 라. 의결일자 : 2025년 03월 18일

2. 개정이유

- 김포시의 태권도 진흥과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태권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안 제3조 ~ 제4조)
- 다. 홍보 및 준용 (안 제5조 ~ 제6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주문사항

- 본 조례안은 현재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체육 단체들과의 형평 문제가 심히 우려되며, 태권도 시범단은 이미 체육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태권도 시범사업”이란 김포시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훈련, 시범 공연,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 시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태권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 및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 등 경비
2.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3. 감독·코치의 인건비
4.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태권도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홍보) ① 시장은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시범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